



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

하이브리드교육지원팀

□ 목 적

우리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(사)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조건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조건>

I.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

- 가. (보상금 지급) 보상금 기준 고시에 의거 포괄방식 약정에 따라 대학에서 매년 지급
- 나. (저작자 및 출처의 명시)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(예명·아호·약칭 등을 포함), 출처를 반드시 명시
- 다. (명시 방법)
 - ① 원격수업 강의 영상 업로드 및 온라인 강의 시 교육시스템(LMS) 내 출처 명시 또는 영상 내 자막처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강의 영상에 직접 삽입
 - ② 외부 콘텐츠 출처 표시 방법 : 저작자, 저작물의 명칭, 수록매체(도서명, 홈페이지 주소 등),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

(예시) 외부 콘텐츠 출처 표시

- 도서: 김영하,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(문학동네, 1996), 120
- 논문: 최민철, "생체인증기술을 적용한 금융자동화기기에 관한 연구"(석사학위,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, 2017), 20
- 동영상: 김영하, "카피킬러 캠퍼스 사용 매뉴얼 1편", 무하유, 2021년 2월 5일, 동영상, 3:10, <https://youtu.be/IDyXUz0vlsc>
- 이미지: 손동현, 문자도 코카콜라, 2006, 한국화, 국립현대미술관, <https://www.mmca.go.kr/collections>

II. 교수자의 강의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

가. 경고 문구 표시

저작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강의 영상 업로드 및 온라인 강의 시 교육시스템(LMS) 내 경고 문구 표시
<저작권 보호 경고문구 예시>

본 교육시스템(LMS)의 수업 자료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에 학습자가 수업 목적에 반하여 외부에 해당 수업 자료를 공개, 게시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나. 학습자 대상 안내

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교수자가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 영상, PPT, 이미지, 폰트, 강의안 등 각종 자료는 교수자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. 따라서 저작권자인 교수자의 승인 없이 강의 영상 및 강의 자료를 복제(녹화, 녹음, 캡처, 다운로드 등) 할 수 없으며, 수강자가 아닌 타인에게 전송, 게시, 배포할 수 없습니다.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오니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다음 사항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학습자 대상 안내문구 예시>

가. 저작권자인 교수자의 승인 없이 강의 영상 및 강의 자료를 복제(녹화, 녹음, 캡처 등)하는 행위
나. 저작권자인 교수자의 승인 없이 강의 영상 및 강의 자료를 타인에게 전송, 게시, 배포하는 행위
다. 무단으로 교수자 또는 학습자의 인물 화면을 녹화 또는 캡처, 음성을 녹음하거나 수업 화면에 노출된 인물의 영상 또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, 게시, 배포하는 행위



<타인의 저작물 이용요건 및 금지된 행위>

구 분	이용 요건
이용대상 저작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연, 공중송신,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
이용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(학부모,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)
이용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복제, 배포, 공연, 전시 또는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
이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 ■ 수업 전후, 연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■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
이용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
허용되지 않는 이용 (이용허락 대상요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용 범위 초과, 저작물의 종류·용도, 복제의 부수·태양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은 금지 ■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, 참고서(워크북 등 포함)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■ 교원에 의해 매학기 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■ 도서, 간행물,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■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,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■ 판매되는 음원·영상 저작물을 시디롬(CD-ROM),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
저작인격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, 편곡,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,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며,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
출처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저작물의 명칭, 저작자, 수록매체(도서명, 홈페이지 주소 등),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

※ **수업목적 외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**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**사전 이용 동의 필요**



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 범위(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)

가. 저작물 활용

- 이미지, 영상, 음원 저작물 이용 시 **허용 범위 내 사용**

저작물 구분	이용 가능 범위	비고
어문 저작물(논문, 소설, 수필, 시 등)	전체의 10%	저작자의 이름, 출처 등의 표기
음악 저작물	전체의 20%(최대 5분 이내)	
영상 저작물	전체의 20%(최대 15분 이내)	
이미지 저작물(사진, 미술 등)	전부 이용 가능	

나. PPT 및 문서 작성

- 폰트 사용 시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**무료 폰트 이용**
- 출판사에서 제공한 PPT 자료 활용 시 출판사가 제시한 이용 범위 내(예시: 비영리적, 교육목적으로 사용 가능함) 이용 가능

다. 동영상 업로드

-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외부 채널(유튜브 등)에 업로드 시 **해당기관(회사) 저작권 정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**될 수 있으므로 유의

공유저작물 사용권장

- **CCL(Creative Commons License)이 부착**되거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, 포기 등으로 **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**(이하 "공유 저작물") 사용 권장

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

- 공유마당: 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>
- 셀바이뮤직: <https://www.sellbuymusic.com/>
- 유튜브 오디오: <http://youtube.com/audiolibrary>
- 자멘도: <https://www.jamendo.com>
- 프리뮤직아카이브: <https://freemusicarchive.org/static>
- 씨씨믹스터: <http://ccmixter.org/>
- 플래티콘: <https://www.flaticon.com>
- 픽사베이: <https://pixabay.com/ko>

저작권법(시행 2022.12.8.)

제25조(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·배포·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(이하 이 조에서 "복제등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.

제136조(벌칙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